예 산 총 칙

2024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계		1,644,501,874	49,335,056
일반회계		1,491,128,779	44,733,863
특별회계		153,373,095	4,601,193
	공기업특별회계	134,556,245	4,036,687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61,710,103	1,851,303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72,846,142	2, 185, 384
	기타특별회계	18,816,850	564,506
	주택사업특별회계	1,164,464	34,934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3,331,027	99,931
	농공단지특별회계	922,000	27,660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977,000	29,31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883,525	116,50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278,734	188,362
	수질개선특별회계	917,100	27,513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158,000	4,740
	도시개발특별회계	129,000	3,870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1,056,000	31,680

- 제 2 조 세입 · 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 세출예산" 과 같다.
-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 제 4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 제 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0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7조 2024년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95,9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 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